

## 공인점수 및 자격증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(학점인정) 2항에 의하여 공인점수 및 자격증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모든 학부(과)의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 (공인점수 학점인정)** 공공인 영어능력 평가원 및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인정한 토플, 토익의 취득점수에 따라 Lab(1), Lab(2)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80%이상 : 2학기 4학점 인정
2. 60%~80%미만 : 1학기 2학점 인정

**제4조** (삭제 2014. 03. 01)

**제5조 (신청절차)** 매 학기 초 4주 이내에 공인점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부서(언어교육원)의 확인을 거쳐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조치)**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고 당해 학기 성적에 반영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199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~제5조)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